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호외 2022. 11. 1.(화)

www.jeonbuk.go.kr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37호 제396회 정례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1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공고 제2022-1637호

제396회 정례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1일

연번	조례안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박동식(063-280-2943)
2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세정과 박대화(063-280-2318)
3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성가족과 양미선(063-280-4789)
4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성가족과 양미선(063-280-4789)
5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성가족과 김현옥(063-280-4788)
6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성가족과 정지혜(063-280-2073)
7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에너지수소산업과 이승원(063-280-4720)
8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최세정(063-280-2694)

※ 문의처 :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 개정('22.4.26 공포)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에 대해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4조 삭제)
- 다.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효력 상실('16.7.1.)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정보시스템(주민e직접플랫폼)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 마. 통·리·반 단위로도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읍·면·동 단위로 작성하던 청구인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도 작성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등 삭제 및 정비

- 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호~제7호서식)
 - 조례 개정사항 반영하여 관련 서식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6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감사관, 인권담당관
- 라. 입법예고 : 2022. 9. 16. ~ 2022. 10. 6.(20일간)

4.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을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하며, 청구인서명부와”를 “하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라북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전라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중전의 제14조) 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을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로,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을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중전의 제15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북 도 지 사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전라북도지사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전라북도지사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에서 <u>조례로 정하도록 한</u> ----- ----- -----.</p>
<p>제2조(도의 책무) ① ~ ③ (생략)</p> <p>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도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u>외국인</u>----- ----- -----.</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u>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u> ----- ----- <u>따라</u> ----- ----- <u>외국인은</u> -----.</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간 대립되는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들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p><삭 제></p>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p>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 -----.</p>
<p>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p>	<p>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p>

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입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③제2항에 따른 수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하며, -----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도지사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3. 전라북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경우에만 -----

③제1항에 따른 -----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라북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전라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⑤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⑥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4조(처리기간) ① (생략)

②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거나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14일 이내----- . ---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

③-----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 범위----- .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

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3. 작 성 자

- 자치행정과 행정6급 박동식(063-280-2348)

참고

관련 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22. 4. 26.>

-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22. 4. 26.>

-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10.
 제출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 경제 회생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한 연장

-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조선산업 분야 투자기업 감면 (안 제9조의2)
 - 감면기한 1년 연장 :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2023.4.4.)를 고려하여 2023.12.31.까지 1년 연장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조선산업 분야 투자기업 감면 (안 제9조의2)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 2)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6조제1항제3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예산과 협의
- 다. 합 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예산과(재정부담), 법무행정과(규제심사),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 라. 입법예고 : 2022년 9월 30일 ~ 10월 20일

마. 비용추계서 : 붙임

바. 기타사항

- 1) 지방세 감면 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23.4.4.)이 종료된 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 및 결과 회신

※ 회신 결과 : 가능(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811호, 2022.8.31.)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의뢰(한국지방세연구원)하여 용역 결과 회신

※ 회신 결과 : 타당(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과제, 2022.10.14.)

4.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일 부터”를 “사용일부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를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 중 “감면함에 있어”를 “감면할 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9조의2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에 있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20조제1항-----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50조제1항 또는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식품산업진흥법</u>」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p>	<p>2. 「<u>식품산업진흥법</u>」 제19조의3제1항----- -----</p>
<p>3. 「<u>식품산업진흥법</u>」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p>	<p>3. 「<u>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5조제1항제1호-----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u>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u>부가가치세법</u>」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p>	<p>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 --- 「<u>부가가치세법</u>」 제8조-----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조</p>	<p>제9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조</p>

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한 업종 중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 분야 제조업(「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동차산업 또는 조선산업의 하도급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제13조(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성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특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 2023년 12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 따른 -----

제14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1. ~ 3.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5조(자동이체 등)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생략)

제1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 사용일부터 -----

제15조(자동이체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 2. -----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

제19조(감면 신청 등) ① -----
----- 별지 제1호서식에 따 -----

② ----- 별지 제2호서식-----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
----- 감면할 때 -----

참고1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

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참고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28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공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1년간 연장합니다.

2022. 3. 3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요내용

- 대상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연장기간 : 2022년 4월 5일 ~ 2023년 4월 4일 (1년간)

붙임	비용추계서
-----------	--------------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2022년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도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세제지원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23.4.4.)로 '23년 이후 추가 감면 연장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몰 연장 대상 감면액의 연평균 실적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	-	-
수입	△1,812	-	-	△1,812

4. 재원조달 계획 : 해당없음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사용된 전제가 변경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6. 협의사항 : 예산과 협의

7. 작성자: 전라북도 세정과 박대화(280-2318)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도세 감면 일몰 연장 대상 감면액 현황(최근3년)

- 감면기간 : 2023년(1년)

(단위:백만원)

조 문	주요 내용	합계	감면액			3년 평균
			'19년	'20년	'21년	
제9조의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조선 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 감면	5,457	3,963	550	924	1,812

※ 감면추계 : 2019년 ~ 2021년 감면 연평균실적 기준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10.
 제출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보건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아동복지법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한 내용 신설(안 제1호~ 7호)
 - 아동복지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신설(안 제2조제10호)
-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인원 10명이내에서 15명이내로 개정 (안 제3조제1항)
 - 아동복지심위원회의 위원 중 추가되는 분야들이 있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3조제4항을 따르도록 개정 (안 제3조제3항)
-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안 제13조)
 - 아동보호조치 등과 같은 급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의 : 인권담당관, 감사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예산과.
- 라.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20일간)
- 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불입

4.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불입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2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9.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0.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당연직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

격을 갖춘 사람

나.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본문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퇴”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제척 등)”을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 중 “위원회에 필요한”을 “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으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p>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12조----- -----</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당연직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 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
-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 3.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생 략)

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기능)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 9.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 10.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
----- 하며, -----
-----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
----- .

- 1. (현행과 같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생략)

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
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6조(제척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
건의 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
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
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생략)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신설>

2. -----
----- 않다고 -----

3. (현행과 같음)

4. ---- 제6조제3항-----
- 않아 -----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해야 한다..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이상-----.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
----- 누설해서는 안 -----
--.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

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
 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
 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운영
 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

3. 작성자

- 여성가족과 사회6급 양미선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10.
 제출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보건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본 조례 2015. 5. 1. 일부 개정 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른 아동복지법 개정 (2020. 10. 1.)으로 상위법과 불일치 부분이 많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도지사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안 제4조)
- 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자문 사항 (안 제5조)
- 라.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의무 조항 (안 제7조)
- 바. 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의무 조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22조, 제23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 인권담당관, 감사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예산과.
- 라.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20일간)
- 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불임

4.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불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라북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군,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경찰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

- 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붙임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운영 및 아동학대예방시행계획수립 등 기존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전라북도 여성가족과 양미선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보건국장

1.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정비 요청*과 관련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2483(2022.07.06.)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제1항)

-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및 의결”에서 “심의 및 자문”으로 개정

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제2항)

-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

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운영 (안 제13조)

- 정기회의 매년 “2회”에서 “1회”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5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인권담당관, 감사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20일간)

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불임

4.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불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결하기”를 “자문하기”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9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2조) 전단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두 차례”를 “1회”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전체 교체)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u>의결하기</u>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제9조 (생략)</p> <p>제10조(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u>해촉</u>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제11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② (생략)</p> <p>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u>회피</u>할 수 있다.</p> <p>제12조(위원회의 임기) <u>당연직</u>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u>위촉직</u>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되</u>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보궐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u>두 차례</u>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p> <p>② (생략)</p> <p>제15조 (생략)</p> <p>제16조 (생략)</p>	<p>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u>자문하기</u> ----- ----- ---- <u>둘 수 있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p>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p> <p>제10조(해임·해촉) ----- ----- <u>해촉</u>할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1항</u>----- ----- <u>회피</u>하 ----- ----- <u>여야 한다.</u></p> <p>제9조(위원회의 임기) <u>위원</u>----- ----- ----- <u>하며,</u> ----- <u>다만,</u>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u>1회</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p> <p>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전라북도 여성가족과 사회복지6급 김현욱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7호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12호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제출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보건국장

1. 제안이유

- 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를 통합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추진에 따라, 기존 조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및 기관명칭 변경
 - 1) 조례명 변경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2) 기관 명칭 변경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 전북여성가족재단, 센터 → 재단(안 제1조~제12조)
- 나. 재단의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조~제2조)
- 다. 재단이 수행할 사업에 대한 명시(안 제3조)
- 라. 재단의 정관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제5조)
- 마. 재산의 조성 및 재산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6조~제7조)
- 바.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
- 사.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
- 아. 행정지원 조항 신설 및 감사 및 감독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제11조)
- 자. 운영 규정 조항 추가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제31조~제97조,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불입 첨부

다. 협 의 : 감사관, 법무행정과, 예산과, 여성청소년과, 인권담당관과 협의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10. 4. ~ 10. 24. (20일간)

4.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전북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3.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4.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5. 여성 인력개발 및 교육 사업
6.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8. 여성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9. 여성단체 지원 및 강화
10. 전라북도내 시·군 등 외부기관, 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자격기준, 추천방법, 절차,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재단의 운영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의 재산은 설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등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되, 전라북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 참여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관련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제6조(재산의 조성) ②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위탁) ①도지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 참여 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계를 실시함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도비 (일반회 계)	인건비	2,372	2,431	2,492	2,554	2,618	12,467
	운영비	759	601	607	613	618	3,198
	사업비	308	308	308	308	308	1,540
합계		3,439	3,340	3,407	3,475	3,544	17,205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없음

4. 작성자 :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6급 정지혜

붙임 2

관련법령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안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 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치분을 하거나 그 가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

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미래산업국장

1. 개정이유

테마체험관 입장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애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조문 수정, 어린이날에 어린이의 무료 입장과 전라북도 자원 봉사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테마체험관 입장료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영상관 구분 용어(4D) 삭제(안 제4조)
- 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조항 삭제(안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 다. 테마체험관 입장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비율에 따른 구분(안 제25조)
 - 입장료 면제 대상에 “어린이(어린이날에 한정함)” 추가
 - 입장료의 감면 비율에 따라 전액 면제, 50퍼센트 감경, 20퍼센트 감경 및 그 밖의 일부 감경으로 구분
- 라. 테마체험관 입장 제한 대상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26조)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정신이상” 용어 삭제
 - 위험물, 악취 및 혐오감에 대한 용어의 명확한 규정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등
- 바. 개정된 용어 및 입장료 관련 개정사항 반영(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관련기관 협의 : 감사관, 여성청소년과, 법무행정과, 인권담당관, 예산과
- 라. 입법예고 : 2022. 9. 2. ~ 9. 22.(20일간)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명칭 :”을 “명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치 :”를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능 :”을 “기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4D영상관”을 “영상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제5조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서”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련하여”를 “관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밖에 산업단지”를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중 “임대(이하 “분양”이라 한다)”를 “임대”로, “건축물(이하 “용지”라 한다)”을 “건축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용지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이에”를 “도지사는 이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통합하여”를 “통합하여 계약서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13조제2항”으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기간중”을 “납입 후 반환 시까지 기간의”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의 조성사업 완료전까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한”으로 한다.

- ① 도지사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용지에 대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3조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3월~10월 :”을 “3월~10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월:”을 “2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입장료의 감면) 테마체험관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영상관 관람료는 감면대상 및 대체 요금 입장에서 제외한다.

1. 입장료 전액 면제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직계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바.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

사. 어린이(어린이날에 한정함)

아. 명예도민증 소지자

2.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부안군 거주자

3. 입장료 20퍼센트 감경: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4. 그 밖의 일부 감경: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대체 요금 입장

가.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나. 입장료에 상당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자(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

제26조제1호 중 “정신이상 및 술에”를 “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험물이나”를 “흉기,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의 체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테마체험관내에 다음과 같이”를 “테마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기간은”을 “위탁 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위탁해지시”를 “위탁해지 시”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민·형사상 책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은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37조 전단 중 “단지”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단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3조”를 “「고등교육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다른 법령의 적용”)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단지의 분양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4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테마체험관 입장료(제24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입 장 료		비 고
	개 인	단체(20인 이상)	
성 인	2,000	1,600	
청소년·군인	1,500	1,200	
어린이	1,000	800	
영상관	2,000		

※ 기 준

- 성 인 :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은 경노 대상임
- 청 소 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
- 군 인 :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대체복무요원을 포함
- 어 린 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초등학생
- 단체입장 :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면제 및 할인 대상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증 소지시) 및 그 유족, 직계가족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시)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자(3개월 유효) ·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 (확인가능시) · 어린이날 어린이 대상 · 명예도민증 소지자 	
할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안군 거주자 50%(확인가능시) · 단체(20인 이상)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는 기존 중증(1~3급)의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등을 소지한 사람도 포함됨

※ 영상관 관람료는 면제 및 할인 제외

○ 대체 요금 입장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전북투어패스	·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입장 가능	
자원봉사 마일리지	· 입장료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입장 가능	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

※ 영상관 관람료는 전북투어패스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불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선도를 위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및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필요한</u> ----- -----.</p>
<p>제2조(명칭 등) 이 조례에 <u>의하여</u>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위치·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u>명칭</u> :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p> <p>2. <u>위치</u>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p> <p>3. <u>기능</u> : 연구, 실증·성능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의 집적화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전시·홍보 등</p>	<p>제2조(명칭 등) ----- <u>따라</u> ----- -----.</p> <p>1. <u>명칭</u>: ----- --</p> <p>2. <u>위치</u>: ----- --</p> <p>3. <u>기능</u>: ----- -----</p>
<p>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관람료”란 <u>4D영상관</u>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된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p>	<p>제4조(정의) ----- <u>뜻은</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영상관</u> ----- -----.</p> <p>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p>
<p>제5조(설치) 단지의 분양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u>소속하에</u>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설치) ----- ----- - <u>소속으로</u> ----- -----.</p>
<p>제6조(기능) <u>위원회</u>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단지의 분양 및 관리에 <u>관련하여</u>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제6조(기능) <u>위원회</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관하여</u> ----- -----</p>
<p>제7조(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되, 당연</p>	<p>제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직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중에서 4명 이내, 위촉직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중에서 7명 이내로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산업단지 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④ (생략)

제8조(회의 및 의결)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분양 및 임대)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이하 “분양”이라 한다)할 용지 및 건축물(이하 “용지”라 한다)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입주자격)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한 자
- 2.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생략)

② 용지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임대료는 분양가격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분양절차) ①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6. --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및 의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분양 및 임대) ----- 임대-----
----- 건축물-----

-----.

제10조(입주자격) -----

-----.

- 1. ----- 따른 -----
- 2. ----- 따른 -----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
-----.

③ 제2항에 따른 -----
----- 도지사
이에 -----.

제12조(분양절차) ① (현행과 같음)

<p>②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 제6조에 따라 ----- -----.</p>
<p>제13조(분양계약) 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13조(분양계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 -----.</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한다.</p>
<p>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지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p>	<p>③ ----- 통 합하여 계약서를 -----.</p>
<p>제14조(계약해지)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14조(계약해지) ① ----- 제13조제1항에 따라 -- -----.</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율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제13조제2항----- ----- <u>않으며</u>----- 납입 후 반환 시까지 기간의 -----.</p>
<p>제15조(분양대금의 납입) 용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의 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p>	<p>제15조(분양대금의 납입) -----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p>
<p>제16조(입주자부담금의 정산) ①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분양대금은 단지의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p>	<p>제16조(입주자부담금의 정산) <삭 제></p>
<p>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대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분양대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p>	<p><삭 제></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8조(분양용지의 환수) ----- 제13조제1항에 따라 ----- ----- 때 ----- -----</p>
<p>제18조(분양용지의 환수)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의 환수를 유</p>	

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1.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3. (생략)

제19조(소유권이전) ① 도지사는 단지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② (생략)

- ③ 도지사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3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도지사는 단지의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자가 용지의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도지사는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이용 및 매표 시간) ① 테마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 2. 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생략)

- ③ 도지사는 운영상 이용자의 편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입장료의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

-----.

- 1. -----
----- 않은 -----
- 2. 3. (현행과 같음)

제19조(소유권이전) ① 도지사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용지에 대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한 -----
-----.

제20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제13조에 따른 -----
----- 정한다.

- ④ ----- 제2항에 따른 -----
-----.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삭 제>

제23조(이용 및 매표 시간) ① -----
-----.

- 1. 3월~10월: -----
- 2. ----- 2월: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제2항에도 -----
-----.

제25조(입장료의 감면) 테마체험관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영상관 관람료는 감면대

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면제한다.

-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3의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 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② 도지사는 미취학어린이, 65세 이상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등은 무료로 하고, 부안군 거주자는 50%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전북투어패스 사용자」에 대하여 50%할인 한다.

제2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정신이상 및 술에 취한 사람
-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3. (생 략)

제27조(행위의 제한 등) ① 이용자는 테마체험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4. (생 략)
- ② (생 략)

제29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

상 및 대체 요금 입장에서 제외한다.

- 1. 입장료 전액 면제
 -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직계가족
 -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바.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
 - 사. 어린이(어린이날에 한정함)
 - 아. 명예도민증 소지자
- 2.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부안군 거주자
- 3. 입장료 20퍼센트 감경: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 4. 그 밖의 일부 감경: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대체 요금 입장
 - 가.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 나. 입장료에 상당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자(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

제26조(입장의 제한) -----
-----.

- 1. 술에 -----
- 2. 흉기,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의 체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
- 3. (현행과 같음)

제27조(행위의 제한 등) ① -----
----- 안 -----.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편의시설) ① -----

기 위하여 테마체험관내에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30조(위탁운영) ① 단지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
학 및 기술대학

3. (생략)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3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단
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마체험관을 재위탁할 시는 도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33조(위탁의 해지) ① (생략)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도의
재산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
해지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
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테마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은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위탁운영)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

3. (현행과 같음)

4. ----- 따라 -----

② ----- 제1항에 따라 -----
-----.

1. ~ 6. (현행과 같음)

③ 위탁 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21조에 따라 -----.

제3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 해서는 안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위탁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탁해지 시 -----

-----.

제34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기관 또는 제3자가 수탁시설물과 재산을 파손·망실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기관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도지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산업기술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1. (생략)
-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국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제34조(민·형사상 책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은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37조(자체운영규정)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단지 -----
-----.

제38조(산업기술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 제3조-----

③ 제2항에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

-----을 적용한다.

<p><u>단지의 분양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u> <u>을 준용한다.</u></p> <p><u><신 설></u></p> <p>제4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u>전라북도</u> <u>공유재산 관리 조례</u>」 및 「<u>전라북도 사무의 민간</u> <u>위탁 기본 조례</u>」 등을 준용한다.</p> <p>제40조(규칙) ----- <u>필요한</u> ----- -----.</p>
--	---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전문)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선도를 위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위치·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2. 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개정 2014. 10. 22.>
3. 기능: 연구, 실증·성능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의 집적화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전시·홍보 등

제3조(구성)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실증·성능평가를 위한 실증연구단지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산업연구단지
3.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테마체험관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원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에서 규정된 용지비, 조성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공동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된 단지안의 도로, 폐기물처리장, 체육시설, 복지후생시설 등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말한다.
3. “입장료”란 테마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영상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제2장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단지의 분양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

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에 입주할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관한 사항
2. 단지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지의 분양 및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22.>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중에서 4명 이내, 위촉직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중에서 7명 이내로 한다.

1. 전라북도 분양 및 관리 관련 실·국장
 2. 부안군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과장
 3. 단지의 관리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4. 전라북도의회 의원
 5. 도 및 부안군 상공회의소 상공인 등
 6. 그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전라북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단지의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제3장 실증연구단지 및 산업연구단지의 분양 등

제9조(분양 및 임대)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은 공공시설용

지를 제외한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입주자격)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한 자
2.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도지사는 용지의 분양가격을 용지의 조성원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경우
 2.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 ②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임대료는 분양가격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분양계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지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지)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납입 후 반환 시까지 기간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분양대금의 납입) 용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

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제16조(입주자부담금의 정산) ① 삭제

② 삭제

제17조(양도와 대여 금지) <삭제 2015. 10. 30>

제18조(분양용지의 환수)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의 환수를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소유권이전) ① 도지사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용지에 대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삭제

제4장 테마체험관의 운영 등

제22조(개관 및 휴관일) 테마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며,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한다.

1. 1. 1일, 명절(설·추석) 당일
2. 월요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23조(이용 및 대표 시간) ① 테마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입장권 대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운영상 이용자의 편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대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입장료) ① 테마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제25조(입장료의 감면) 테마체험관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영상관 관람료는 감면대상 및 대체 요금 입장에서 제외한다.

1. 입장료 전액 면제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개정 2019. 8. 9.>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바.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

사. 어린이(어린이날에 한정함)

아. 명예도민증 소지자

2.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부안군 거주자

3. 입장료 20퍼센트 감경: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4. 그 밖의 일부 감경: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대체 요금 입장

가. 전북투어패스 사용자

나. 입장료에 상당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자(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

제2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흉기,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의 체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행위의 제한 등) ① 이용자는 테마체험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테마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및 기념품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5장 위탁운영

제30조(위탁운영) ① 단지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전라북도 출연기관
4.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단지 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단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테마체험관을 재위탁할 시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지원금과 입장료 등 수입금을 단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지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32조 및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도의 재산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민·형사상 책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은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35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단지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8조(산업기술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 ① 도지사는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2.>

②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9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1. 11.>

제4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발생 예상

3. 작성자

- 신재생에너지과 지방시설주사보 이승원(063-280-4720)

참고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농생명축산식품국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발전기금 존속기한(2022.12.31.까지) 도래로 해당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존치결정으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
- 나.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6조)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기금관리법」,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부서협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법무행정과(규제 심사),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예산과(재정부담),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 라. 입법예고 : 2022. 9. 16. ~ 10. 6.(20일간)

4.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를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50세 미만”을 “50세 미만”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3조 중 “확보, 지원하기”를 “확보·지원하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시·군”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도계약에 의하여”를 “별도의 계약을 통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수탁 금융기관”을 각각 “수탁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예탁 받은 금융기관”을 “따른 수탁금융기관”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한다.

①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7명 이내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로 한다.

제10조 중 “귀농자”를 “귀농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 기관”을 “따른 수탁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기관에”를 “수탁금융기관에”로, “수탁기관은”을 “수탁금융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u>	<u>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u>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귀농자금”이란 타 시·도에 거주하던 50세미만인 세대주 중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자에게 농어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자금, 영농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설치)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p> <p>1. (생략)</p> <p>2. 자치단체의 출연금</p> <p>3. 4. (생략)</p> <p>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의 출연금에 따라 본 기금을 차등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기금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 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계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수탁 금융기관의 기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④ 수탁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p>	<p>제2조(정의) ----- 뜻은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50세 미만 ----- ----- 사람 ----- ----- 에게 -----.</p> <p>제3조(기금의 설치) ----- ----- 확보 ----- ----- 지원하기 -----.</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단체---</p> <p>3.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시·군 ----- -----.</p> <p>제5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별도의 계약을 통해 -----.</p> <p>③ 수탁금융기관----- -----.</p> <p>④ 수탁금융기관-----</p>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 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예탁 받은 금융기관은 당해목적으 로 구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요청에 의 거 자금을 융자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1. ~ 3. (생략)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용자대상 사업자 범위) 기금은 제9조에 따라 용자대상사업을 하는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귀농자에게 융자한다.

제11조(용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사업의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3조(용자금의 상환) ① (생략)

② 도지사는 기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안한 때

-- 대하여 -----.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제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 따른 수탁금융기관-----
----- 범위----- 따
라 -----.

③ ----- 운영관리-----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밖에 -----

②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
-----.

제10조(용자대상 사업자 범위) -----

----- 귀농인-----
-----.

제11조(용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고려하여 ----- 사람 중-----
-----.

제13조(용자금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밖에 -----.

1. ~ 3. (현행과 같음)

4. ----- 않은 -

<p>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 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반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u>수탁기관에</u>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u>수탁기관은</u>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 따 <u>른 수탁금융기관</u>----- ----- -----.</p> <p>② ----- <u>수탁금융기관에</u> ----- ----- <u>수탁금융기관은</u> -----.</p> <p>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 <u>2027년</u> <u>12월 31일</u>-----.</p> <p>제17조(시행규칙) ----- <u>필요한</u> ----- -----.</p>
--	--

붙임 1

비용 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도 청년농업인 기준 변경 (만40세미만 → 만18세이상 45세미만)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지 출	이차보전금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추가분담액 (이자감면)		20	20	20	20	20	100
	소 계		1,320	1,320	1,320	1,320	1,320	6,600
수 입	도 출연금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시군출연금		500	500	500	500	500	2,500
	이자수입		700	700	700	700	700	3,500
	소계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3.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출 연 금 (도 비)		1,300	1,300	1,300	1,300	1,300	6,500
출 연 금 (시 군 비)		500	500	500	500	500	2,500
이 자 수 입		700	700	700	700	700	3,500
합 계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4. 협의사항 : 기금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5. 작 성 자 : 농산유통과 최세정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 최근 3년간 평균 780,902천원 × 2.6% = 20,303천원
- 청년농(만40세미만) 7.7% → 청년농(만45세미만) 10.3%, 2.6% 증가
- <최근 3년간 이차보전금액 기준 추가소요액 추계>

(단위:백만원)

구분	이차보전금(전체)							
			청년농(40세미만)			청년농(45세미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평균	369	780	53	60	7.7%	71	80	10.3%
계	1,108	2,324	160	180		214	242	
2019년	339	785	31	29		42	39	
2020년	380	803	60	64		77	84	
2021년	389	755	69	87		95	119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통합계정 적용범위와 예탁의무)

① 제9조제1항제1호의 기금은 도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